

대법원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에 대하여

서경숙*

|| 차례 ||

- I. 서론
- II. 일본법 이식과 일본어투 표현의 유입
- III. 판결서 속의 일본어투 표현
- IV. 결론

【 】

본 연구의 목적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판결서에 일본어투 표현이 유입된 이유를 알아보고 실제 판결서에 출현한 일본어투 표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어투 표현이 판결서에 유입되게 된 이유는 일제 식민지라는 시대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일본식 근대화를 겪으면서 일본 사법 제도와 일본법이 조선에 이식되었다는 점, 일본어와 조선어의 강제적인 이중언어 사용 환경이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해방 이후에도 법전이나 사법 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사법 실무자들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투의 잔재가 사라지지 않고 현재까지 답습되어 온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서에는 첫째, 파생 접사 ‘-의’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者’나 ‘亡’과 같이 비자립어를 자립어로 사용하는 등의 잘못된 어휘 사용이 나타났다. 둘째, 조사의 오용도 빈번히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조사 ‘의’와 조사 상당어의 불필요한 사용 양상이 크게 눈에 띈다. 또한 일본어에 이끌린 잘못된 조사 선택도 나타났다. 셋째, 문장 내에서 ‘-(으)ㄴ’을 이용한 명사절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일본 법전에 사용된 ‘동사 기본형+に’를 그대로 차용한 흔적이다. 넷째, 지시 표현의 과도한 사용을 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연구생

수 있다. 불필요한 지시 표현은 일본 법전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일본국헌법에서 영어의 수동태를 피하기 위해 도입된 토피-평언 구조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급심 판결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답습되어 온 일본어투 표현을 걷어내고 올바른 판결서 쓰기를 통해 판결 내용과 더 나아가 법 정신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제어 : 판결서, 일본어투 표현, 법, 사법 제도

I. 머리말

법은 언어로 기록되고 재판은 언어로 논쟁하게 된다.¹⁾ 법은 언어로 법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판단의 정확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결국 언어라는 구조물을 통해 사법 권력이 행사된다.²⁾ 이렇듯 언어와 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일반인이 법의 언어³⁾를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법의 언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법률 용어가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이다. 어휘나 문법 측면에서 잘못된 표현이 많은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본고에서 다루게 될 일본어투 표현도 한몫 거두고 있다. 본 연구는 대법원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법체계가 성립될 무렵부터 일본법과 일본의 법률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왔기 때문에 일상 언어 규범과는 괴리된 법 언어가 탄생하

1) 서경숙·니시야마 치나 공역, 『법과 언어, 법언어학으로의 초대』, 박이정, 2016, p.15.

2) 배종대·이상돈 편역, 『형법정책』, 세창출판사, 1998, pp.116-117.

3) 언어학과 법의 학제적 학문을 ‘법의 언어학’이라 부른다. 법언어학(forensic linguistic)과 법과 언어(language and law)를 아우르는 말이다. 이 분야에서는 주로 법 언어와 사법 과정(주로 재판)의 언어를 언어학적 입장에서 연구한다.

게 되었다. 판결이 법전의 충실한 해석에 기초한다는 점에서도 법전에 녹아든 일본어투 표현이 판결서에도 녹아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서에 나타난 일본어투 표현의 양상은 어떠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둔다. 대법원 판결은 부(部)와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진다. 통상의 대법원 재판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사되며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이 선고된다. 그러나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대한 재판일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모여 다수결로 판결하게 된다. 즉,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재판이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이나 법률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열리게 된다. 최근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2018년 11월 1일 선고 2016도10912) 판결이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8년 10월 20일 선고 2013다61381) 판결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원합의체가 내리는 판결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공식적 합의라는 점에서 통상의 판결과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정치적 의미도 가지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에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의 배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1)은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배상 판결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기숙사의 사감’은 ‘寄宿舍の舍監’을 떠올리게 한다. の가 없는 ‘기숙사 사감’이 더 국어다운 표현일 것이다. ‘입금되어 있던’도 상당히 일본어스러운 어감을 풍긴다. ‘入金されている’가 떠오르는 것은 우연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본 재판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므로 판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였을 것인데도 일본어투 표현이 판결서 안에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판결서라는 장르적 글쓰기에 일본어투 표현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1) 원고 2는 기숙사의 사감에게 일본에서 일한 임금이 입금되어 있던 저금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사감은 청진에 도착한 이후에도 통장과 도장을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청진에서 하루 12시간 동안 공장건설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면서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본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본어투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서에 집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적인 판결을 뒤집는 판결로 새로운 판례가 되어 하급심에서 유사한 재판이 있을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서가 법조계에서 일종의 글쓰기 모범으로 답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숙련된 법 전문가들의 전형적인 글쓰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경력 20년 이상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이들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0년 이상의 법관들로 구성되며,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즉 대법원의 판결서는 숙련된 법조 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개인의 개성적 글쓰기보다는 수년간의 직업적 경험에 따른 장르적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 주는 자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II. 일본법 이식과 일본어투 표현의 유입

1. 일제의 일본법 이식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근대화를 이

룩하지 못하고 타율적인 근대화를 경험하게 된다. 법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의 실정에 맞는 법 제도의 개편이나 개혁이 아닌 일본법 체계의 이식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지도 모른다.

1908년 일본 제도를 모방한 재판소구성법에 근거해 설치된 법원에 다수의 일본인이 법관으로 임명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어는 법정의 공용어가 되고 일본의 사법 제도가 한국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10년 한일합방을 계기로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본격적인 법적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일제는 ‘조선에시행할법령에 관한건’(1910년)을 제정하여 일본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12년 조선총독부의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에 따라 일본 민법과 상법이, 그리고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따라 일본 형법이 의용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해방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미군정은 점령지의 통치 편의를 위해 일제의 법령을 그대로 존속시켰다. 조선은 외형적으로 일제의 압제에서는 벗어나기는 했지만 총독부가 시행한 법률의 효력은 조선 내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설치된 법전편찬위원회(法典編纂委員會)는 민법, 형법 등의 기본법제의 제정사업에 착수하였다. 1953년에는 형법이 제정되었고 1958년에는 민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다수의 일제법령들은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1960년 초까지 그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 후 5.16 군사쿠데타로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7월 15일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구법령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일제의 법령은 완전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⁴⁾ 이것으로 우리는 형식적으로나마 자주적인 법전을 가지게 되었다.

4) 박병호,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 용어」, 『法學論文集』 26,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그러나 그 내용이나 법률 용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일본법 그대로였다. 결국 현행 한국 법령에 일본식 법령 용어의 영향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강화되었고 우리는 일본 법학의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그대로 계수(繼受)한 것에 불과했다.

이처럼 일본법을 충실히 번역하여 그대로 들여왔기 때문에 법전과 법률 용어는 여전히 일본 법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⁵⁾ 심지어 새로운 법령의 제정 과정에서도 일본 법령을 그대로 차용하는 사례도 있으며, 오역으로 인한 잘못된 용어와 문장이 그대로 우리 법전에 정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본어식 법령 용어와 일본어투 표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국 법령의 커다란 숙제 중의 하나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일본법도 자생적으로 탄생한 것은 아니다. 메이지 시대에 영국법과 프랑스법에 독일법을 혼합하여 차용하였다.⁶⁾ 이 시기는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매우 이질적인 서구법의 계수기였으므로 법령 용어의 혼재와 오역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영어, 프랑스, 독일어의 오역과 부적합한 번역이 불가피했다.⁷⁾ 이러한 이유로 일본 법전은 일본에서조차 난해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혼합법적 성격을 띤 난해한 일본 법전을 번역 수준에서 그

2002, p.13.

5) 일본식 한자어(和製漢語)를 기초로 성립된 것이 많은데 상당수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引渡, 組合, 株式는 ‘ひきわたし’, ‘くみあい’, ‘かぶしぎ’와 같이 한자로 쓰기만 하고 혼독하는 순수한 일본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한자음으로 음독하여 수용하였다.

6) 메이지 초기의 서구법 계수의 모델은 영국법과 프랑스법이었으나 그 후 메이지 정부의 절대적 통치 체제가 확립되면서 서구법 계수의 모델국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프로이센, 즉 독일로 급선회하게 된다. 절대주의적 통치 체제를 확립한 메이지 정부로서는 전형적인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던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절대주의적 자본주의를 지향하던 프로이센의 법제를 모범으로 삼고자 했다.(박종호 2002:20-21)

7) 정종휴, 『비교법적 시야에서 본 한국민법전』, 『법사학연구』 12, 한국법사학회, 1999, p.133.

대로 차용한 우리의 법전은 이러한 난해함을 태생적으로 잉태하고 있었다.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일본어투 용어와 문체가 법전에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난해한 법전의 문체와 일본어투 표현은 법전을 교과서로 삼는 법률가 집단에 그대로 전달되어 현재의 판결서에도 고스란히 묻어나게 되었다.

2. 일본어 간섭과 일본어투 표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에서 정복자의 언어인 일본어는 조선의 공식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제도권 교육은 일본어로 실시되었으며 행정 관청 등에서도 공식 언어로 일본어만을 사용해야 했다. 반면 조선어는 사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민족어, 일상어의 지위에 머무르게 되었다.

1930년대 말에는 조선어 말살 정책이 절정에 달해 일상생활에서도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어는 국어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조선어는 일상적인 사용조차 금지되기에 이른다. 이후 일제는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면서 민족의 혼도 철저히 말살하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생활 속에서 일본어의 간섭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일제 압제 속에서 태어난 세대의 조선어 실력은 형편이 없었다. 학생들은 조선어를 정식으로 학습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생활이나 수업 시간에는 오직 일본어만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조선어가 설 자리는 없었다.

(2)는 나영균(1997:255-256)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 회고담을 통해 해방 이후 학생들이 조선어로 학습하거나 글을 쓰는 것에 크게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학습 언어로 일본어가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2) <…> 우리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공립학교였기 때문에 일본어 사용이 다른 학교보다 철저했다. 날마다 종례 때에는 ‘국어(일본어) 상용의 맹서’라는 것을 ‘황국식민의 맹서’와 함께 큰 소리로 제창하면서 우리는 별 의심도 없이 일본어를 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사립학교 학생들보다 잘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까지 했다. (중략) 그러다가 해방이 되어 우리는 10월에 이화여자대학교에 편입되었다. 일본어 교과서나 참고서의 사용이 일체 중단 되고 우리말 강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한글을 전혀 안 쓰던 학생들이 갑자기 우리말로 필기를 하자니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일본 발음의 한문 술어만 들어오다가 우리말로 발음되는 말들은 생소하여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우리말 교과서가 미처 만들어지기 전이라 노트가 유일한 의지인 학생들은 필기를 하다가 못 알아들을 말이 나오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교수는 칠판에다 한문자를 써 주는데 이런 일은 몇 마디마다 되풀이되었다. 그러니 진도는 한 학기가 다 가도 예정표의 5분의 1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한문자를 못 알아들을뿐더러 우리는 철자법도 몰랐다. 학교에서 배운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언문이라고 불리던 우리 글자를 알기는 아는데 각자 자기 방식대로 되는대로 쓰고 있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개학한 지 한 달 만에 철자법특강을 전교생을 위해 열어 주었다. <…>

지식인들의 조선어 구사 능력도 그 당시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수의 지식인이 일본 유학을 경험하였고 일본어로 고등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인이나 교육자들로 대표되는 지식인들도 일본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가운데는 일본어의 기초 위에 조선어의 문어를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 김윤식(1974)에 따르면 현대문학을 시작한 많은 작가들이 처음에는 일본어로 작품 활동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14세에 일본 유학길에 오른 이광수, 일본 유학파인 정비석과 이무영도 모두 일본어로 첫 작품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10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고등 교육을 받은 염상섭과 전영택, 현진건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은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일본어의 토대 위에 조선어의 문어가 형성된 것이다. 정광(1995)와 김광해(1995)의 지적대로, 실상 그들은 일본어를 일본인 만큼 능숙하게 하는 이중언어 구사자였다.

- (3) ㄱ. 가정교사 강 엘리자베트는 가르침을 끝낸 다음에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 ㄴ. 엘리자베트는 작은 소리로 날카로운 부르짖음을 내었다.
- ㄷ. 또는 거기는 조금도 상관없는 다른 공상이 속속히 그의 머리에 왕래하였다.

(3)은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에 나오는 문장들이다. (3ㄱ, ㄴ)은 어색한 동사의 명사형을 품고 있는 전형적인 일본어투 표현이다. (3ㄷ)에서 ‘왕래하다’는 ‘생각 등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함.’이라는 뜻을 가진다. 한국어에는 이러한 의미 용법이 없고 일본어 ‘往來’에는 주변 의미로 이러한 의미 용법이 존재한다. (3)을 통해 문인들의 글에 나타난 일본어 간섭을 엿볼 수 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사용한 우리말 문장은 일본어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어서 문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은 문학 작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우리말 문장 언어 전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⁸⁾

광복 이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직접 차용이 어렵게 되었고 일제의 잔재 추방, 외색 문화 추방이나 우리말 순화 노력으로 일본어 요소도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인적 요소가 사회 각층에 그대로 등용되었기 때문에 국어와 일본어가 접촉을 멈췄다고 볼 수는 없다.⁹⁾

8) 정광, 「일본어투 문장 표현」, 『새국어생활』 5, 국립국어원, 1995, p.93.

다시 돌아와, 법관들의 언어 사정을 살펴보면 법관들의 조선어 실력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당시 사법권은 조선이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조선의 법관들은 다수의 일본인 법관에 예속되고 법정에서는 당연히 일본어가 사용되었다. 식민지 당시 법관들도 일본 유학을 통해 법을 배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본어도, 일본 법전도 상당히 친숙했을 것이다. 법전이나 사법 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해방 직후의 상황에 적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원에서 판결서를 집필하던 판사들은 해방 전에는 일본어로 실무를 보았고 해방 이후에는 동일한 재판 절차에 따라 한국어로 실무를 보았다. 해방 이후에 판사들은 일본어의 간섭을 받은 한국어로 판결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판결서들은 큰 저항감 없이 후배 판사들에 의해 판례로서 인용되었을 것이고, 결국 일상어와 동떨어진 판결서의 문체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돌아보면 민법, 상법, 형법 등의 우리 기본법들이 진정한 의미의 조선어 원어민에 의해 제대로 작성된 적이 사실상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¹⁰⁾

요컨대, 일본어투 표현은 조선어와 일본어의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후 이중언어 환경은 사라졌지만 일본 법전을 차용한 한국 법전이 크게 변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는 법률가에게 일본어투 문체와 표현이 그대로 답습되어 왔다.

9) 송민,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14, 국립국어원, 1988, p.28.

10) 김동욱, 「한국 민법조문의 문법표현에 나타난 일본어의 영향」, 『어어일문학회』 51, 한국어어일문학회, 2004, p.415.

Ⅲ. 판결서 속의 일본어투 표현

1. 기존 논의

차용이 일어날 때 어휘의 차용이 가장 쉽게 일어나며 문법 요소나 통사 구조는 비교적 차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가 있다. 두 언어의 접촉에서 차용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이 어휘 층위이고 문법이나 구문 층위에서는 매우 드물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본격적인 일본어 영향을 받기 이전의 근대국어에 비하여 현대국어 문어에서 매우 다른 문장 구조와 관용적 표현이 생겼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¹¹⁾

언어 간섭이 어휘 층위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문법이 유사한 언어에서는 통사 층위의 간섭도 일어나게 된다. 통사 층위의 간섭 가능성은 송민(1988)에서 처음 지적되었고, 이후 정광(1995), 김광해(1995) 등에서 지지되었다.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통사 구조는 ‘-고 있다’, ‘있을 수 있다’, ‘있어야 할’, ‘-던 것이다’와 지나친 피동형과 사동형 등으로 언급되었다.¹²⁾

법전에 남아 있는 일본식 법률 용어나 표현에 대해서는 김문오·홍사만(2003), 홍사만(2004¹⁾), 홍사만(2004²⁾) 등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법률 용어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법전에 남아 있는 일본어투에 대한 연구라면 본 연구는 실제 법관의 공식적인 언어 사용을 엿볼 수 있는 판결서의 일본어투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1) 정광, 『일본어투 문장 표현』, 『새국어생활』 5, 국립국어원, 1995, pp.87-88.

12) 본 연구에서도 언어 간섭은 어휘 층위는 물론 문법 층위나 표현 층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두 언어의 구조가 유사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으며, 두 언어를 모두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구사자 혹은 이중언어 구사 환경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2. 대상 자료와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에서 2018년 현재까지 공개한 전원합의체 판결서 199건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도서관 사이트(<https://library.scourt.go.kr>)에 접속하면 2006년 판결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연도별 공개 건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판결서

선고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10	17	16	8	13
선고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16	28	16	11	20
선고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13	14	17		
총	199건				

PDF로 된 199건의 판결서를 text 파일로 모아 AntConc로 용례 검색을 하였다. 무작위로 전체 자료의 25%에 해당하는 50건의 판결서를 대상으로 샘플 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일본어투 표현을 중심으로 용례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 자료에 태깅 작업을 하지 않아 품사 등의 정치한 검색이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일본어투 표현을 검색·유형화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 20회 이상 출현한 용례만을 대상으로 분류하여 3.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 과정에서 일본어투 표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 민법 혹은 일본국헌법을 수록하여 비교하였다.

3. 대법원 판결서의 일본어투 표현

1) 어휘의 잘못된 사용

① ‘-적(的)’의 과도한 사용

접미사 ‘-적(的)’은 일본어투 표현의 전형으로 인식되는데 1910년대 이후 소설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퍼지게 되었다. ‘-的’이 결합된 단어는 일본어에서 그대로 차용된 경우가 많으며 용법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김광해(1995:14)에서 지적하였듯이, 접미사 ‘-的’이 노걸대(老乞大)나 박통사(朴通事)와 같은 백화문 자료에서 사용된 몇 예를 제외하고는 개화기 이전에는 거의 출현하지 않았다. 메이지 시대인 1987년에 번역된 『增訂化學訓蒙』에서 ‘-的’의 용례가 처음 발견되는데 영어 형용사 ‘-al, -tic, -sive’의 번역에 사용되었다.¹³⁾ 특히 ‘-tic’에 발음이 유사한 ‘-的’을 붙여 표현한 것이 이후에 조어 방식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다양한 어휘로 퍼져나가게 된다.¹⁴⁾

(4) ㄱ. 채권은 ‘소멸’을 전제로 하는 한시성을 기본적 성질로 하고 있고, 민법은 만족되지 않은 채권의 소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만족되지 않은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2018다22008)

ㄴ.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2015두45700)

13) 정영숙, 『일본어 접사(接辭) “적(的)”의 성립 및 한국어로의 유입 문제 고찰』, 『일어 일문학연구』 25, 일어일문학회, 1994, p.35.

14) 안찬원,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어투 표현 사용 실태와 순화 방안』, 『한글』 315, 한글학회, 2017, p.107.

- ㉔. 평시에도 항상 전시를 대비하여 집단적 병영생활을 하는 군 임무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군사법원 체제가 전시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미리 조직·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 (2016초기318)
- ㉕. 이러한 항소심 실무관행은 제1심의 양형을 최대한 중증하는 태도라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남항소를 조장하고 종국적으로는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가 없음에도 항소 이유가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015도3260)
- ㉖. 앞서 본 것과 같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 그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인 적법성 내지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반영하여 도시정비법에 새로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 (2012도 7190)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판결서에서는 ‘기본적’, ‘행정편의적’, ‘집단적’, ‘종국적’, ‘절차적’ 등과 같이 셀 수 없이 다양한 예가 확인된다. 판결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的’이 불필요한 부분에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4ㄱ)은 ‘기본’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며, (4ㄴ-ㄷ)의 나머지 표현들도 ‘-的’을 삭제하고 ‘행정편의로’, ‘집단’, ‘종국에는’, ‘절차의 적법성’으로 바꾸어 쓰면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② 비자립 어근의 자립화

한국과 일본의 어휘는 한자의 영향으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어만 해도 거의 65% 이상이 한자어이다. 그런데 개별 한자의 자립성은 일본어와 한국어가 동일하지 않다. 특히 일본어는 여전히 훈독의 전통이

남아 있어서 동일한 한자어가 문맥에 따라 자립어가 되기도 하고 의존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의존성이 강한 한자어는 절대 자립명사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런데도 (5)와 같이 법문에서 사람을 지칭할 때 자립성이 없는 한자어인 ‘者’를 단독으로 사용한다. ‘者’는 한국어에서는 자립명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범죄자, 과학자’ 등과 같이 접미사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5)는 한국어의 어법상 어색하다. 반면 일본어에서는 ‘者’는 ‘もの’로 혼동하는 고유어 자립명사이기 때문에 (6)과 같이 쓰는 것이 일본어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일본 민법 조항에 ‘者’가 빈번히 등장하는데 일본 민법을 번역하여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용법이 우리 민법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5) 민법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¹⁵⁾

(6) 일본 민법

(住所)

第二十二條 各人の生活の本據をその者の住所とする。

(居所)

第二十三條 住所が知れない場合には、居所を住所とみなす。2 日本に住所を有しない者は、その者が日本人又は外國人のいずれであるかを問わず、日本における居所をその者の住所とみなす。ただし、準據法を定める法律に従いその者の住所地法によるべき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15) 법전에 ‘있다’, ‘없다’ 앞의 주격 조사가 일괄적으로 생략되는 것도 일본어투 표현의 영향이다. 특히 일본어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판결서에서 법 조항의 인용이 아닌 경우에는 ‘있다’, ‘없다’ 앞의 주격 조사가 생략된 문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판결서에는 한국어의 어휘적, 형태적 지위가 무시된 채 어근의 지위를 가지는 한자들이 자립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父’나 ‘母’도 한국어에서는 비자립명사이나 일본어에서는 자립명사로 쓰인다. 법률에서 ‘부’와 ‘모’는 한자 어근임에도 자립명사처럼 사용되고 있고 특히, 친자 소송이나 상속법에 관련된 판결서에서는 어근인 ‘父’나 ‘母’가 여전히 자립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6) ㄱ. 1945. 8. 15. 이전에 사망한 자의 청구권을 청구권협정에 따라 보상하는 민간청구권에 포함시켜 그 피징용사망자에 대한 신고 및 보상 절차를 마쳤다. (2013다61381)

ㄴ. 망 소외인, 원고 2는 화로에 석단을 넣고 깨뜨려서 뒤섞거나 철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서 석탄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있고 기술습득과는 별 관계가 없는 매우 고된 노역에 종사하였는데, 제공되는 식사이 양이 매우 적었다. (2013다61381)

대법원 판결서에 등장한 (6ㄱ)의 ‘者’도 일본어의 ‘もの’의 흔적이므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바르다. (6ㄴ)의 ‘망(亡)’은 ‘망하다’의 어근으로, ‘亡子, 未亡人’ 등에서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한국어에서 단독으로 접두사 혹은 관형사로 쓰이는 용법이 없다.¹⁶⁾ 반면 일본어에서 ‘망(亡)’은 접두사로서 ‘亡祖父, 亡祖母’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어 용법에 이끌려 (6ㄴ)이 나타난 것이다.

16) 아래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web2.korean.go.kr>)의 용례를 참고할 때 한국어에서는 일본어 ‘亡’의 용법을 ‘故’가 담당하고 있다.

고10(故) 「관형사」((죽은 사람의 성명 앞에 쓰여))

이미 세상을 떠난. ¶ 고 ○○○ 선생의 유해.

2) 잘못된 조사 사용

① ‘의’의 과도한 사용

조사가 잘못 쓰인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의’이다. 우리의 법조문에는 주격이나 목적격 자리에 ‘의’가 사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의’가 사용된 사례도 있다.¹⁷⁾ (7ㄱ)은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로 주격 조사가 쓰일 자리에 ‘의’가 쓰였다. (7ㄴ)은 ‘전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부터’로 목적격 조사가 쓰일 자리에 ‘의’가 쓰인 법조문이다. 이는 우리의 민법 조항이 일본어 민법 ‘前婚の解消’ 등을 그대로 번역해 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습관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법률전문가 집단에 정착되어 지금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를 ‘의’로 대신하여 쓰면서 명사구로 연결해 가는 방식은 일종의 규범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¹⁸⁾

17)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주어적 속격 구성이 일본어의 영향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통사적으로는 후행하는 명사와 연결하는 속격의 역할을 하면서도, 의미적으로는 서술어의 주어 기능을 수행하는 주어적 속격의 전통은 중세 국어나 고대 국어에서도 문증된다.

(예) ㄱ. 諸佛스 맛당호믈 조차 說法호미 뵈디 아로미 어려우니라

<法華經諺解 1:175b>

ㄴ. 乾達婆矣 游鳥隱城叱兮良望良古 <彗星歌>

(乾達婆의 놀던 잣솔랑 바라고)

그러나 본고의 직관으로는 (7)의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이나 ‘전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부터’는 상당히 어색하다. 현대국어에서 관계절에 나타나는 주어적 속격의 용법이 다소 위축되어 가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7)은 현대국어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어색하며 이는 일본 법전의 직접 차용을 거치는 과정에서 들어오게 된 일본어투의 잔재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지면 관계상 후일을 기약한다.

18) 김동욱, 『한국 민법조문의 문법표현에 나타난 일본어의 영향』, 『일어일문학연구』 51, 한국일어일문학회, 2004, p.413.

(7) ㄱ.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ㄴ. 제821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전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재혼 후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은 명사구를 무리하게 ‘의’로 연결하여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읽어 내기 힘들게 되었다.

(8) ㄱ.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2010도5986)

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상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법관이 가질 수 있는 유죄의 예단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 (2009도7436)

ㄷ.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606)

ㄹ. 이와 같은 몰수 또는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 부가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 <…> (2008도5596)

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은 대법원이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 확인해 온 확립된 견해이다. (2006도4549)

(87-ㄱ)은 명사나 명사구를 ‘의’로 편리하게 연결함으로써 문장의 간결함을 추구하였으나 그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의’의 사용을 배제하고 적절하게 풀어쓰고 동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 (87)은 ‘재심 판결을 받았을 당시 법령’으로, (8ㄴ)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로 수정할 수 있다. (8ㄷ)은 ‘그러한 해약을 고지하여’, (8ㄹ)은 ‘이득을 박탈할 목적으로’, 혹은 ‘이득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로, (8ㅁ)은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정도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불필요한 조사 상당어의 사용

조사 상당어는 조사와 동사 활용형이 굳어진 표현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에 있어’, ‘에 대하여’, ‘에 관하여’, ‘에 의하여’가 그것이다. ‘에 있어’, ‘에 대하여’, ‘에 관하여’, ‘에 의하여’는 일본어 ‘において’, ‘に對して’, ‘に關して’, ‘によって’의 번역을 통해 한국어 문장에 들어온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판결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예이다. 이것은 일본어 번역투에서 유래한 조사 상당어가 일상생활에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럼에도 순화해야 하는 이유는 조사 상당어가 문장의 의미 관계를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고 장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조사 상당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조사로 대체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면 판결서의 가독성이 높아지게 된다.

- (9) ㄱ.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으로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2004다37775)
- 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중 정당한 이율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 (2004다50426)

- ㄷ. 등기제도의 기능을 몹시 약화시키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07다15172)
- ㄱ. 은밀한 방법에 의하여 전달될 필요도 없다. (2004도4899)

(9ㄱ) ‘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문맥에서 ‘에서’로 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ㄴ)은 ‘돈에’로 충분히 의미가 통한다. 판결서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이렇게 ‘에 대하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9ㄷ)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으로 반드시 ‘에 관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률을 인용할 때 ‘에 관한-’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일본어에서 법령을 지칭할 때 ‘에 관한 법률(-に關する法令)’과 같은 표현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데에 이끌린 것이 아닌가 한다. (9ㄹ)은 ‘은밀한 방법으로’로 바꾸는 것이 의미가 더 잘 통한다. 법제처(2017)에서는 법조항을 인용할 때 일본어투 표현인 ‘에 의하면, 에 의하여’ 대신에 ‘에 따르면, 에 따라’를 권장하고 있다.

③ 올바르지 않은 조사 사용

판결서에는 일본어 용법에 이끌려 조사가 잘못 선택된 경우도 있다. ‘위반하다’는 ‘NP1이 NP2를 위반하다’로 쓰는 타동사이다. 그러나 일본어 ‘(法規)に違反する’의 ‘に’에 이끌려 판결서에 ‘에 위반하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되다’의 일본어인 ‘になる’에 이끌려 ‘에 되다’, ‘로 되다’로 쓰인 용례도 확인된다.

- (10)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원을 근로자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2007다90760)

(10)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 결과로 되었기 때문이다.’로 수정해야 어법에 맞는 한국어 문장이 된다. 한국어에서 ‘금속으로 된 장신구, 타

원형으로 된 탁자' 등으로 '되다'가 조사 '로'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는 재료나 성분, 혹은 모양(형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조사 '로'로 표시할 수 있다. 결과가 최종 결과물일 경우에는 '물이 얼음이 되었다.' 혹은 '동생이 의사가 되었다.'처럼 보격 조사 '이/가'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나친 명사절화

일본의 법조문에 등장하는 '동사 기본형+に'는 대개 명사화소 '-(으)ㄹ에' 혹은 '-기'로 번역되었다.¹⁹⁾ 판결문에서는 명사화소 중 '-기'보다는 '-(으)ㄹ'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1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민법에서의 '동사 기본형+に'는 한국 민법에서 '-(으)ㄹ에'로 그대로 번역되었다.

(11) ㄱ. 일본 민법 4조(未成年者の行爲能力)未

成年者カ法律行爲ヲ爲スニハ其法定代理人ノ同意ヲ得ルコトヲ要ス但單ニ權利ヲ得又ハ義務ヲ

免ルヘキ行爲ハ此限ニ在ラス

ㄴ.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2018다22008

ㄱ. 소멸시효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

ㄴ. <…> 기판력의 구체적 의미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해석에 맡겨져 있다.

ㄷ. 대법원은 기판력이라고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

19) 김문오·홍사만, (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연구원, 2003.

판결서에서 ‘-(으)ㄴ’ 명사화는 ‘하다’로 끝나는 동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현한다. 전체적으로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하나의 판결서 안에서 최소한 5-6회 이상 상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12ㄱ)은 ‘소멸시효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혹은 ‘적용할 경우에’, (12ㄴ)은 ‘정한 것이 없어서’, (12ㄷ)은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판력이라는 것은’, ‘기판력이란’ 등으로 문맥에 맞게 바꾸어 쓸 수 있다. 최근의 명사화소의 추이가 ‘-(으)ㄴ’보다는 ‘-는 것’의 추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함’은 ‘-하는 것’으로 풀어 쓰는 것이 현대 한국어 감각에 더 가깝다.²⁰⁾

4) 지시 표현의 중복

판결서에는 ‘이’ 혹은 ‘그’나 ‘이를’ ‘그를’과 같이 지시 관형사나 지시 대명사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한 예가 보인다. 역시 한국어의 고유한 용법이 아니며 일본어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어 문어에서 이러한 용법을 자주 볼 수 있다.

(13)은 일본국헌법²¹⁾ 29조에서 ‘이를’(これを)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어에서 수동 표현은 빈번히 사용되지만 (13)처럼 ‘재산권’, ‘재산권의

20) 김문오·홍사만, (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연구원, 2003.

21) 일본 메이지 헌법은 에도막부가 서양 국가들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일본을 서양 국가들과 대등한 나라로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지도자들이 당시의 유럽에서 주류로 여기던 입헌군주제에 기반하여 만든 일본 최초의 근대 헌법이었다. 입헌군주제는 천황제를 중심으로 국가의 기초를 닦으려던 위정자들의 의도와 부합했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 후 미국과 연합국 군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에서 작성한 영문 초안을 바탕으로 일본국헌법이 마련되었다. 이 초안을 번역하여 일본국 헌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영어로 된 법을 일본어로 의도를 살리면서 번역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이노우에(1994) 혹은 서경숙·니시아마 치나(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내용, ‘사유재산권’과 같이 사람 주어가 아닌 사물이 주어가 되는 문장(이른바 물주 구문)은 영어 수동태 문장을 번역해 놓은 문장으로 느껴져 일본어에서도 외국어스럽고 부담스러운 표현이다. 일본국헌법을 제정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픽 구조를 도입하고 여기에 다시 지시표현 ‘이를’ 등을 사용하여 수동태 문장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해서 (13) “재산권은,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와 같이 어색한 조문이 탄생하게 되었다.

(13) 일본국헌법

第二十九條 財産權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2 財産權の内容は、公共の福祉に適合するやう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3 私有財産は、正當な補償の下に、これを公共のために用ひることができる。

(14) ㄱ. 위 조항에서의 지령은 그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은밀한 방법에 의하여 전달될 필요도 없다. (2004도4899)

ㄴ. 따라서 피부착명명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명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2011도15057)

ㄷ. 대법원 1993. 3. 9. 선고92다48413 판결은 타인의 불법행위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그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다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 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2011재다199)

- ㄷ.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2014다46211)
- ㄱ.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 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인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008두17363)

(14)는 전원합의체 판결서에 나타난 불필요한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가 포함된 용례이다. (14ㄱ)의 ‘그’는 지시 형용사인지 지시 대명사인지 용법도 중의적이다. 이 문장에서 불필요한 요소인 ‘그’를 삭제하더라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의미 전달이 명확해진다. (14ㄴ~ㄷ)은 단순한 말버릇과 같은 군더더기 요소라서 그 지시 관계가 모호하다.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판결서 이해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므로 자제해야 한다.

IV. 결론

본고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서를 바탕으로 일본어투 표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려운 판결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명사구가 반복되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결의 기저에는 ‘의’의 과도한 사용이나 일본식 조사 상당어의 사용, 빈번한 명사절의 사용 등의 일본어투 표현이 숨어 있다. 이러한 표현을 걷어 내고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어법에도 맞는 올바른 판결서를 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일본어투에 대해서는 국어 순화의 차원에서 학자들이 많이 지적해 왔다. 그러나 판결서의 일본어투 표현에 대한 연구는 소략

한 편이다.²²⁾ 국어학자에게는 법이라는 전문 영역이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 판결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올바른 글쓰기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글쓰기라서 관습적으로 범하고 있는 잘못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판결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해 가능한 글쓰기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일본어투 표현을 바로잡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판결서가 되도록 국어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2) 선행 연구 중에서도 장소원(2009)와 박진호(2018)을 참고할 만하다. 법률 텍스트 문장의 문법성에 대해서는 장소원(2009)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서의 문체 개선 방향에 대한 포괄적 연구는 박진호(2018)을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 김광해, 「조망 :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새국어생활』 5, 국립국어원, 1995, pp.3-26.
- 김동욱, 「한국 민법조문의 문법표현에 나타난 일본어의 영향」, 『일어일문학연구』 51, 한국일어일문학회, 2004, pp.411-430.
- 김문오 · 홍사만, 「(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연구원, 2003.
- 김윤식, 「한국 작가의 일본어 작품 말」, 『문학 사상』 9월호, 1974.
- 나영균, 「시대와 말」, 『새국어생활』 7, 국립국어원, 1997, pp.255-262.
- 박병호, 「현대법계의 형성과 법제의 발전방향」, 『법제연구』 8, 한국법제연구원, 1995.
- ,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 용어」, 『法學論文集』 26,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pp.7-14.
- 박종호, 「한국에서의 외국법의 계수와 법률용어의 형성과정」, 『법학논문집』 26,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pp.15-47.
- 박진호, 「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판결서의 문체 개선 방안」, 『사법』 44, 사법발전재단, 2018, pp.93-124.
- 배종대 · 이상돈 편역, 『형법정책』, 세창출판사, 1998.
- 서경숙 · 니시야마 치나, 『법과 언어 - 법언어학으로의 초대』, 박이정, 2016.
- 송 민,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14, 국립국어원, 1988, pp.25- 34.
- 안찬원,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어 투 사용 실태와 순화 방안」, 『한글』 315, 한글학회, 2017, pp.99-128.
- 장소원, 「법률 텍스트 문장의 문법성」, 『텍스트언어학』 2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9, pp.1-29.
- 정 광, 「일본어투 문장 표현」, 『새국어생활』 5, 국립국어원, 1995, pp.87-107.
- 정영숙, 「일본어 접사(接辭) “적(的)”의 성립 및 한국어로의 유입문제 고찰」, 『일어일문학연구』 25, 일어일문학회, 1994, pp.27-55.
- 정중휴, 「비교법적 시야에서 본 한국민법전」, 『법사학연구』 12, 한국법사학회, 1999, pp.33-151.
- 홍사만, 「우리 민법에 남아 있는 일본어식 표현(1) - 명사구 표현」, 『어문론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pp.57-98.

홍사만, 『우리 민법에 남아 있는 일본어식 표현(2) - 혼독고유어와 음독한자어』, 『어문
론총』 40,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pp.1-73.

イノウエ, キョウゴ, 『マッカーサーの日本國憲法(古關彰一監譯・五十嵐雅子譯)』, 桐
原書店, 1994

Abstract

A Study on the Japanese-oriented Expressional Tendencies Found in the Ruling Sentenc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Suh, Kyoung-sook

The aim of the present paper is to examine the Japanese-oriented expressional tendencies found in the ruling sentenc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 will explain how Japanese style expressions were introduced into the rulings and explore the kinds of expressions that appear in the sentences.

The origin of the use of Japanese expressions in rulings sentences can be traced back to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Joseon was forced through a Japanese style modernization, and in the new bilingual environment traditional Korean law was mostly supplanted by a Japanese style legal system. Even after its liberation, the laws, judiciary practitioners, and overall judici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did not undergo major changes.

In the Supreme Court rulings analyzed for this study, the use of incorrect vocabulary and the misuse of josa (particles) were significant. In addition, ‘-(으)□’ noun clause constructions were used excessively. Finally, many unnecessary indication expressions were used. Through my research, I discovered that these sorts of misusages mirror the literary traditions found in Japanese laws and legal writings.

The Japanese style legalese found in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sentences is unapproachable and confusing for South Koreans. However,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have a great influence on subordinate judgments and on the lives of the citizens of South Kore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out the Japanese influenced expressions that have endured and try to express the contents of judgments and the spirit of Korean law in a manner that would be more accurate and accessible to the citizens of South Korea.

Key Word : Ruling sentences, Japanese-oriented expression, Law, Legal system

서경숙

소속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연구생

전자우편 : catsuh78@snu.ac.kr

이 논문은 2019년 2월 11일 투고되어
2019년 3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3월 11일 게재 확정됨.